

# 2002년도 농림사업실행계획서

(농림부)

농림부는 최근 2002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발표했다. 특히 올해는 양계발전 종합대책이 마련된 후 시행되는 첫 번째 농림사업으로 계육업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. 이에따라 본지는 2002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육계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발췌, 여러분들의 이해를 돋고자 한다.〈편집자주〉

<b>31.농축산물판매 촉진사업</b>			
<input type="radio"/> 사업분류	<input type="radio"/> 농축산물판매촉진	<input type="radio"/> 농축산물판매촉진	<input type="radio"/>
<input type="radio"/> 지원대상품목	<input type="radio"/> 김치, 신선채소, 인삼, 과실, 화훼, 전통장류, 축산물	<input type="radio"/> 김치, 신선채소, 인삼, 과실, 화훼, 축산물	<input type="radio"/> 국산원료 미사용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<input type="radio"/> 지원내용	<input type="radio"/> 수출에 필요한 포장, 선별, 운송비 등 일부를 수출물류비로 지원	<input type="radio"/> 수출에 필요한 포장, 선별, 운송비 등 물류비용과 해당품목의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조성사업 지원 - 수출조성사업은 예산액의 4%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	<input type="radio"/> 수출판매촉진 지원과 관련된 부대업무처리비용 최소화 인정 (현지검역, 배 봉지구입, 교육비용 등)
<input type="radio"/> 지원기준	(신설)	<input type="radio"/> 원예부류 : 국가별 표준물류비의 30%지원 - 신시장/신상품 개척, 수출단지육성, 품목특성 고려 등 장기적 수출 확대를 위하여 표준물류비의 5% 범위내에서 항목별로 인센티브 추가 지원  <input type="radio"/> 축산물 : 포장상자 제작비의 40% 범위내 지원(단, 신규수출시장 개척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포장	<input type="radio"/> 품목별 통일된 지원단가 마련  <input type="radio"/> 장기적 수출확대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도 도입  <input type="radio"/> 축산물 중 수출 유망품목의 수출 확대 촉진

구 분	현 행(2001)	변 경 안(2002)	변경 사유
33. 우수농수산물 지원사업		재비 및 운송비등 지원 검토)	
□ 지원대상	○ 농업법인중 출자금 1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 수출자금 지원불가 등 지원조건 규정(농림 사업실시규정 제41조 별표3)	○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 명시('02 농림사업시행지침서)	○ 일반업체와 형평성 결여 ○ 수출 촉진 및 확대 취지에 부적합
□ 대출 최저한도	○ 최저 적재물량 및 금액기준 설정 - 1컨테이너 해당액으로 하되, 50백만원 이상	○ 최저한도 단일화 : 품목당 50백만원	○ 컨테이너 기준 적용은 품목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- 고가인 인삼, 밤, 송이 등과 배추 등 채소류를 동일한 물량기준으로 적용 곤란
34. 축산물품질 향상			
I. 원료돈 구매 자금지원	(신규)	- 사업대상자 : 양돈농가 등과 계통 출하계약을 체결한 육가공업체 • 자금회전율이 8회전이상 업체 - 사업물량 및 금액 : 315천두(392억원) - 지원조건 : 연리5%, 1년거치 일 시상환	신규사업
II. 육가공업체 시설지원	(신규)	- 사업대상자 : 고품질·위생적인 돼지고기생산을 위한 가공·저장시설, 운송·장비등 시설현대화를 기하고자 하는자 또는 기존업체중 시설증축 및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자 - 사업물량 및 금액 : 22개소, 28,500백만원(융자19,950, 자담 8,550) • 시설신축 및 증축(13개소) : 개소당 1,500백만원(융자1,050, 자담 450) • 시설개보수(9개소) : 개소당 1,000백만원(융자700, 자담300) - 지원조건 : 연리5%, 5년거치10년균분상환	
III. 규격돼지,닭 출하촉진자금 <돼지>		- 2002.1~12월기간중 동일 수출 업체에 반기(6개월)동안 400두이상 규격돈을 출하한 실적이 있는 개별농가 및 계열화업체 중 신청자	
○ 사업대상자		- 200억원	
○ 사업비		- 연리5%, 1년후 상환	
○ 지원조건			

구 분	대상 및 조건	방법 및 기준	기준 및 조건
〈닭〉 ○ 사업대상자  ○ 사업비 ○ 지원조건		- 육계계열화업체 중 닭고기는 수출하는 업체 또는 농가 - 50억원 - 연리5%, 1년후 상환	
35. 축산물유통 개선지원사업 I. 도축 도매시설 1) 도축장시설 현 대화사업 2) 축산위생시설 (도축장HACCP) 및 컨설팅 지원 3) 축산물물류 표 준화사업			
I. 가공판매시설 1) 계란집하장설 치 및 계란등급 신설지원 ○ 사업대상자  ○ 사업비 ○ 지원조건	(신규)	- 기존도축장 3개소 이상 통폐합 - 컨설팅 지원비율 보조 70%, 자담30%  - 축산물부분육가공장에 대한 포장 자재비 등 지원	- 기존도축장 2~3개소 이상 통폐합 - 보조50%, 자담50%  - 대상자 요건완화로 실효성을 높임 - 보조지원비율 축소  - 부분육상장표준규격 제정고시 ('01.3.15)에 따른 사업활성화
2) 닭고기 부분육 가공시설 ○ 사업대상자  ○ 사업비 ○ 지원조건	(신규)		
3) 식육소매유통 시설 ○ 지원액		- 사업대상자 : 육계계열화업체중 도계장을 보유하고 냉장 닭고기 수 출을 하기 위해 닭고기 가공시설을 보완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- 3,500백만원 - 연리5%, 5년거치 10년상환	- 사업대상자 : 육계계열화업체중 도계장을 보유하고 냉장 닭고기 수 출을 하기 위해 닭고기 가공시설을 보완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- 3,500백만원 - 연리5%, 5년거치 10년상환
		-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지원 - 식육판매모범업소지원 - 한우고기전문판매점 : 140 ~1,050백만원 - 식육판매모범업소 : 14백만원	- 식육소매유통시설로 통합 - 시설개선 : 35백만원 - 시설설치 : 140~1,050 백만원  - WTO패널결과에 따라 한우고 기 전문판매점 지원 종료

주 봄	현 행(2001)	변 경 안(2002)	변 경 사 유
7) 닭고기체인첨 설치지원	(신규)	- 응자70%, 자담30 - 개소당 975백만원 - 연리5%, 3년거치 5년상환 - 생산자단체 및 돈가스가공시설을 갖춘자로서 국내산 돼지고기 중 암. 등심을 이용하여 돈가스를 가공하 여 판매코자 하는 자	
8) 돈가스 외식프 랜차이즈 설치 사업 ○ 지원대상	- 농협, 도드람유통		- 지원대상자 확대
9) 축산물종합처 리장.공판장 및 도매시장운영 활성화 사업 ○ 지원대상	-LPC, 도매시장.공판장	- LPC, 오리도축.가공장, 도매시장. 공판장 - 년리5~8%, 1년후 상환	- 2001년도 신규사업지원대상 (오리도축.가공장) 확대
10) 오리.말 도축. 가공시설 설치 사업 ○ 지원대상	-년리5~8%, 1년후 상환	- 오리도축장 및 말고기 가공장	
III.축산물등급판정	- 등급거래지역(고시지역)의 확대 -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 의 무지역 확대	-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정책 - 계란등급제 시범실시 - 닭고기등급제 사전준비	
40. 농업종합 자금지원 1.목 적	○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  ○ '01년에는 농.축산경영자 금중 전업경영체 지원자금인 농기업경영자금, 축산전업경 영 자금을 농업경영종합자금 과 연계 운용 - 재원조달방법은 현행대로 하되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 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원토록 함으로써 자금지원의 효율성 극대화	○ 농업종합자금지원  (삭제)	○ 사업명칭 변경 - 유사명칭이 많아 표절 우려 ○ 자금제도 폐지로 자금구분 설 명 필요없음.
5. 사업시행 요령 가. 사업내용	○ 원예특작.축산분야 재배. 생산에 종사중이거나 신규로 종사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으로서 소정의 사업계획 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 당분야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	○ 원예특작.축산분야 재배.생산에 종사중이거나 신규로 종사하려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, 또는 선진작목 반(공동이용시설에 한함)으로서 소 정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 출하고 해당분야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	○ 대상자에 선진 작목반(공동이 용시설 설치 및 운용의 경우) 추 가 - 공동이용시설이 아닌 경우 개 별대출로 전환 바람직

구 분	현 행(2001)	변경 안(2002)	변경 사유
	<p>영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기업경영자금, 축산전업 경영자금 연계 운용에 따른 지원대상(시설자금은 지원하지 않음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쌀분야 : 쌀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, 정책자금(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) 기지원 유통가공시설 보유사업자, 경주마사육 축산농가,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사업자</li> <li>- 개보수자금 및 운영자금에 한하여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영농규모, 연령, 영농종사 기간과 관련한 제한은 없으며 대출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기준에 반영</p> <p>(신설)</p>	<p>영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쌀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, 정책자금(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) 기지원 유통가공시설 보유사업자, 경주마사육 축산농가,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사업자</li> <li>- 개보수자금 및 운영자금에 한하여 지원</li> </ul> <p>(삭제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기업경영 및 축산전업경영 자금 '02년에 폐지</li> <li>○ 불필요한 문구 삭제</li> </ul>
2)지원조건 ○ 자금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운영자금 2년이내 상환</li> </ul> <p>(신설)</p> <p>※ 토지매입자금 용도제한 - 지목상 '답'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운영자금 2년이내 상환(단,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3~5년 일시상환)</li> </ul> <p>※ 기존시설물 및 기조성 과수원 구입지원 불가</p> <p>※ 토지매입자금 용도제한 - (삭제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제영농종사자 지원기회 확대</li> <li>○ 운영자금은 계열화주관업체에서 부담하므로 운영자금 지원 시 이중지원초래</li> <li>○ 농업농촌기본법상 설립요건 충족</li> <li>○ 부설정후자 지원 제한</li> <li>○ 농기업경영자금에서 이미 지원되고 있는 표고버섯은 산림청지원과 중복</li> <li>○ 인삼식재자금 구분변경 반영</li> <li>○ 자금의 중복지원방지를 위해 기존 시설물 구입지원을 제한</li> <li>○ 규제철폐를 반영</li> </ul>

	현 행(2001)	변 경 안(2002)	변 경 사유
○ 운영자금	- < 신설 > -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	- 노지 300평미만, 시설부지 100평미만 및 매입단위가 전업농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-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『농산물매취 및 수입농산물 수입(구매)소요액은 지원제외』	○ 투기적매입방지 및 단계적 사업확장을 유도(매입상한설정) 및 소규모매입 방지  ○ 매취 및 수입액 지원제한 필요
○ 지원한도	○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백만원이상(상한액 없음)	○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백만원 이상. 단, 금차투자사업이 전업농규모(법인의 경우 구성임원수 만큼 승하여 적용)를 초과할 경우 당해 초과사업비 및 당해 운영자금은 지원제외	○ 순차적 안정적 투자유도를 위해 투자규모 상한을 설정
나. 사업추진체계	※ 대출취급 승인을 얻은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 및 회원조합에서 수시로 별도 공고하며 각 사무소에는 '농업경영종합자금취급사무소'라는 표지를 부착	(삭제)	○ 실효성 측면에서 관련내용 삭제
3) 취급자금	○ 농업경영종합자금, 농기업경영자금은 원칙적으로 전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축산전업경영자금은 축산분야에만 지원 ※ 운영자금이나 개보수자금 신청의 경우에는 시.군의 의견조회를 하지 않음. 단, 인허가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 시군의 의견을 요청	(삭제)	○ 취급자금 구분 불필요 문구삭제  ○ 기존 시설개보수의 경우 공부상 면적증가 없는 단순시설교체 등으로 의견조회 생략 필요
3) 심사방법	(신설)	○ 쌀생산 품질인증 농가 및 법인은 가점 특별우대	
아.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	○ 농협중앙회는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업무추진실태와 관련하여 매반기별로 여신검사(loan-review)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와 신용대표이사에 보고 ※ 시설원예분야의 시설설계, 시공업체 선정, 시공 및 공사감리에 관해서는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름	○ 농협중앙회는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업무추진실태를 매반기별로 점검하고 해당결과를 농협내 감사지도부서 및 농림부에 보고  ※ 시설원예분야 시설 설계, 시공업체 선정, 시공 및 공사감리에 관해서는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에서 정하는 별도지침에 따름. 다만 700평이하 과이프비닐온실의 공사감리는 본 지침 적용을 배제함	○ 대출업무 취급의 적정성 지도라는 당초 도입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업무처리 실태점검으로 대체바람직  ○ 자동화온실1-2W-L형까지는 농업인의 자율시공을 허용하고 고액투자 온실은 적용
〈축산분야〉 가. 지원대상사업	○ 양돈, 양계(육계.산란계 포함)	○ 양돈, 양계(육계.산란계 포함)	

주제	설정(2001)	변경(2002)	특징
○ 분야별 지원대상 사업 <경종농업분야>	<p>함)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시설설치자금지원을 제한(다만, 양돈분야의 경우 제한시기는 돼지고기 대일수출 재개시까지로 함) 하되, 시설면적의 증가가 없는 사업장 이전 및 노후시설의 개축(재건축 포함)은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보수.운영자금은 계속 지원</li> </ul>	<p>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시설설치자금지원을 제한(다만, 양돈분야의 경우 제한시기는 돼지고기 대일수출 재개시까지로 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보수.운영자금은 계속 지원</li> <li>- 단, 아래의 경우에는 시설설치자금 지원 가능</li> </ul> <p>① 시설면적의 증가가 없는 사업장 이전 및 노후시설의 개축(재건축 포함)</p> <p>② 남은 음식물사료화 시설을 지원받은 농가가 양돈시설을 설치할 경우</p> <p>③ 기존 종계장, 부화장증에서 규모화를 위해 전업종계장(사육규모 2만수이상), 전업부화장(주당 20만수이상) 규모로 시설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</p> <p>④ 기존 양계농가 중에서 계열업체와 계약하여 수출용으로 닭을 사육(3만수이상)하기 위해 시설을 증축 또는 신축 할 경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구수정</li> </ul>
○ 평가기준 <신규후계농업인>	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○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,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</p>	<p>○ 후계농업인이 원활 경우 농업경영컨설팅 지부담금중 60%(사업비의 30%)내인 자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축사, 고정식온실.하우스시설 등 기준의 영농시설물(중고 농기계 포함) 구입가능</li> <li>- 이 경우 지방법원(등기소) 등의 등산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(확인인) 의무화</li> </ul> <p>○ 표고버섯(노지재배에 한함), 밤, 송이버섯, 산나물, 산악초, 장뇌, 조경수, 분재,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,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</p> <p>○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,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 과목(예 : 선인장 재배 등)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(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)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 가능</li> </ul>	<p>○ 중장기 농업인력육성 세부과제 제출안 반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의 영농시설물 이용을 제고 및 한정된 지원자금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기존 영농시설물 및 중고 농기계 구입이 가능하도록 완화</li> </ul> <p>○ 임산물 생산 및 내수면 어업분야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대상품목이 불명확하여 담당공무원의 질의가 빈발하여 명문화</li> <li>○ 재배품목이 희소하여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선인장 재배 등 특수작목 재배농가에서의 교육이수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 해소</li> </ul>

분야	현 행(2001)	변 경 안(2002)	변 경 사유
52.농공단지 육성사업 가.사업내용 (2)지원대상  <행정사항> 사후관리	○ 공영개발 농공단지  (신설)	○ 공영개발 농공단지 및 민간의 실 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 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 ○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과 연 계, 관련업종 유치, 계열화 등으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	○ 농공단지 통합지침 개정 내용 반 영  ○ 농공단지 경쟁력 제고
54.농축산경영자금  1.목적 ②전문농업경영 자금 ○ 지원조건  가.일반축산경영자금 ○ 지원대상자  다.재해대책경영자금 ○ 지원대상자 ○ 지원조건	○ 농업경영자금  (신설)  ○ 부업규모 축산농가  ○ 축산농가 중 재해를 입은 농가  ○ 법령에 의한 재해 - 농어업 재해 대책 법령 및 자 연재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재 해로 판정된 경우 ※ 중앙지원(국고+융자)이 있 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해	○ 농축산경영자금  ○ 재해농·축산농가에게 저리의 자 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어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에 기여  ○ 1년이내, 연리 5.0%. 단, 인삼 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 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 별로 5년이내까지 ※ 전문농업경영자금 중 인삼분야 신규 인삼식재자금은 당해연도 신 규 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이하인 농 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연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하되 일반 전문농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연간 1,500만원이내에서 지원 ※ 신규 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당해연도 농업 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 가능  ○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농업종 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준전업 축 산농가  ○ 농림부장관이 재해대책의 일환 으로 상환연기 또는 특별 지원키로 한 재해농가와 그 해당금액  ○ 법령에 의한 재해 : 1~2년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-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: 1년이 내(필요한 경우 1년 범위내 연장가 능), 연리 5.0% <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>	○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 금 통합 ○ 재해대책자금 지원에 따른 지 원목적 신설  ○ 인삼식재자금 지원 내용 신설  ○ 농업종합자금 지원 관련 지원대 상자 확대  ○ 농업경영자금에 일반 재해 대책 자금 지원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

제 2 장 농업자금 지원 및 대출			
	<p>당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장, 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령(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법)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</li> </ul> <p>※ 기타사고의 유형 : 화재, 정전, 붕괴, 가축의 도난, 폐사 등</p> <p>※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</p>	<p>○ 지원대상 : 시장, 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령(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)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타사고의 유형 : 화재, 정전, 붕괴, 가축의 도난, 폐사 등</li> <li>-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</li> <li>- 피해율이 30% 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</li> <li>-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제외(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)</li> </ul>	
	<p>○ 지원금액</p> <p>○ 호당 300만원~1억원이내</p> <p>※ 지원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, 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지원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호당 지원액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법령에 의한 재해 : 정부(지방자치단체 포함) 지원액(보조+융자)과 피해액과의 차액 범위내</li> <li>·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: 보험금, 공제금 및 정부지원액(설치분보상비 등)을 제외한 피해액의 50% 범위내</li> </ul> </li> </ul>	<p>○ 호당 100만원~5천만원이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, 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가능</li> <li>- 호당 지원금액 : 연간경영비의 50% 범위내 지원</li> </ul>	
9. 대출실행 및 채권보전 ○ 대출제한대상	<p>○ 중앙회 임직원, 조합장 및 조합의 상근임직원 (신설)</p>	<p>○ 농협중앙회 및 농·축협 상근임직원(조합장, 계약직 직원 포함)</p> <p>○ 자금을 농업법인 단체에 대출한 경우 농업법인 단체의 출자자 또는 임원개인의 경영자금</p> <p>○ 농업종합자금 중 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자</p>	<p>○ 농업경영자금에 일반재해대책 자금 지원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</p> <p>○ 지원제한대상 확대</p> <p>○ 자금증복지원 제한</p>